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21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 박성준·한민수·박희승

정성호・윤종군・노종면

허 영ㆍ이소영ㆍ박홍근

허종식 • 박상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문턱이 지나치게 낮음에 따라 불법대부업체들이 등록대부업체 명의를 돈을 주고거래한 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한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원 금과 법정 최고이자를 보장하고 있어 불법적인 영업에 따른 이익을 근절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한편 최근 대부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하여 주면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대부중개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자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시·도지사에 등록되어 있

어 지방자치단체의 여력 부족으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촘촘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 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한 광고의 경우 대부중개로 보기 어려워 해당 조항의 적 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불법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대부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의2,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2항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둘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업 이용자 간의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위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이하 "대부중개플랫폼"이라 한다)을 활용해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제3조의5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1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을 "해당 계약의 이자계약 부분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경우그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전부 무효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하여서는"을 "하거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중개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을 "제3조의5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을 "제3조의5제1항제3호, 제5호가목"으로, "제2항제5호"를 "제2항제2호, 제5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을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대부중개를 하거나"를 "대부중개를 한 자, 대부중개플랫폼을 이용하게 한 자,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거나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기존 대부중개플랫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대부중개업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중개업자가 이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존 등록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갱신을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 등) ① (생 략)	제3조(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②
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	
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둘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
	부업 이용자 간의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위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이하 "대부중
	개플랫폼"이라 한다)을 활용
	해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	1. 1 <u>억원</u>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5. (생략)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 1. (생략)
- 2.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7. (생략)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① ~ ③ (생 략)
-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 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⑤ · ⑥ (생 략)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11조(미등록대부역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 제한) ① -----

2. ~ 5.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1 <u>억원</u>
<u>.</u>
3. ~ 7. (현행과 같음)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해</u>
당 계약의 이자계약 부분은
<u>.</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 -----경우 그 금전소비대 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 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 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 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 ⑥ (생 략)

-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생략)
 - ② 시 ·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하다.
 - 1. (생략)
 -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 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 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 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u>하거나 미등록</u>
대부업자가 대부중개플랫폼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2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12
2의2
<u>제3조의5제1항제1</u>
호, 제3호, 제5호가목

차 약정은 전부 무효로 한다.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
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 8. (생략)

③ ~ ⑧ (생 략)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5.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u>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u>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 자를 받은 자
 - 4. 5. (생략)
 -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u>대부중개를 하</u>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2의3
<u>제3조의5제1항제3</u>
호, 제5호가목
<u>제2항제2호, 제5호</u>
2의4. ~ 8.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①
<u>2억원</u>
<u>.</u>
1. ~ 5. (현행과 같음)
②
 1 0 (취레기 기 O)
1. · 2. (현행과 같음)
3. <u>제8조</u>
4. · 5. (현행과 같음)
6
o. 대부중개를 한
자, 대부중개플랫폼을 이용하
게 한 자, 또는
· 1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